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과 대부도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정비(안 제16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정비(안 제23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정비(안 제51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세칙 정비(안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정비(별표 1부터 별표 20까지)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도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1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입목 본수도와 경사도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입목본수도는 개발행위허가의 산정기준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시 산정기준이 상이하여 개발행위허가 적용기준을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30 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
- 경사도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함.
-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적용기준과 산정방식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고 「산지관리법」과 상이하게 적용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주요내용은 녹지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중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중 지목이 염전·유지인 경우 500m²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은 현행과 같이 대지규모가 1,000m²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2종 균린생활 시설 중 1,000m² 미만도 심의를 받는 대상을 거목(다중생활시설), 더목(단란주점 같은 건축물 바닥면적 150m² 미만) 및 러목(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의 시설로 규정함.
-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부지면적 1,500m² 이상인 경우와 창고(농업·임업·어업)는 부지면적 660m²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의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대부분 녹지지역의 심의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도 중요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이 곤란한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61조(기능)부터 제69조(분과위원회)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별표 1부터 별표 20까지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은 조례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조례에서 허용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
- 대부동 지역의 보전녹지지역 내 허용용도 중 소매점을 허용용도에서 제한하는 내용은 소매점으로 기 허가를 득한 118건 대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 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전녹지지역 내 소매점 제한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단독주택은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3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에 대하여 2층이하 건축물로 허용한 내용을 금번 조례 개정으로 3년 이상 거주한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농어업인의 단독주택 허가건수는 1건으로 조례 개정 시 운영의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부칙 안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변경되고, 보전 녹지지역에서 허용가능 한 건축물에서 소매점이 제외되므로 이 조례 개정 공포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역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근거 마련

3. 검토의견

-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등)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물순환 선도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중수도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등 경보기기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제6호)
- 물순환 선도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내 중수도시설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호)

3. 검토의견

- 공중화장실에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경보기기와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4조(설치기준)제6호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곽지역의 공원 부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야간에 여성 및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설치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설치기준)제7호는 공중화장실에 중수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물의 재이용 및 절약을 위하여 권장하여야 할 시설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판매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어,
-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4항 규정에 따라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대상 사무현황

- 시설개요
 - 설치일시 : 2009년 12월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45(성곡동)
 - 부지면적 : 10,465.3m²
 - 건축연면적 : 4,373.21m²(지하 2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처리용량 : 200톤/일(호기성퇴비화)
 - 발효조 A(910m³×1기) + B(910m³×1기) = 15일 체류
 - 후숙조 A(910m³×1기) + B(660m³×1기) = 21일 체류
 - 유분회수시설 : 160톤/일×1기
 - 악취방지시설 : 2,000m³/분×1기(고농도), 1,000m³/분×1기(저농도)

- 근무인원 : 26명
- 주요업무 :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연간 소요예산 : 6,811,448천원
 - 비정산 2,108,841천원 정산비 2,941,181천원 공공요금 981,426천원
 - 기타회계전출금 780,000천원

3. 검토의견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7. 5. 31일자로 만료되어 동 시설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유지관리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기술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방식에 있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기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안산도시공사 위탁 등 세 가지 안에 대하여 민간 위탁 업무의 효율성, 예산절감 방안,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감안하여 선정방식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탁방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 | |
|------------------|--|---|
| 구 분 | 장 점 | 단 점 |
| 민간위탁(제한경쟁 입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 운영경험이 있는 업체선정으로 기술력과 전문성 확보 ○ 노무관리의 탄력적 운영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의 한시적 운영으로 이익만을 추구 우려 및 고용불안정 ○ 인수·인계 등 업무인수 기간 업무 공백 발생 우려 ○ 부실업체가 느ickle될 경우 음식물처리의 불안정 |
| 민간위탁(수의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참여와 7년간의 운영으로 노하우 및 안정성 확보 ○ 타 음식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술력, 전문성 갖춤(의정부, 전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 추구로 기술개발에 소극적 ○ 참가 희망업체 참여기회 제한 |
| 공공위탁(안산도시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공기업 설립취지에 부합 ○ 정규직 전환 시 고용안정 ○ 인건비(이윤), 일반관리비 절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유연성 낮아지고 조작비대화 및 인건비 상승예상 ○ 운영기술과 전문성 부족 ○ 안정성 추구로 기술개발에 소극적 ○ 예산, 정원 등 의회승인 필요 |

- 참고적으로 민간위탁(재위탁도 포함)에 대한 의회의 동의 범위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의 여부를 동의하는 것이고,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누구로 할 것인지는 집행부의 고유 업무임.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